

베네수엘라의 탄화수소조직법 (Ley Orgánica de Hidrocarburo) 에 관하여

I. 들어가며

21세기 남미지역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에 대한 관심은 그의 반미주의나 특별한 베네수엘라 예외주의 차원에서 많은 국제적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2000년 이후 베네수엘라의 국제적 부상은 서반구는 물론 글로벌 차원의 국제관계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총 인구 2,650만 명의 영향력을 넘어서는 파괴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영향력에 대한 이유 고찰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베네수엘라 예외주의는 현재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는 천문학적인 '탄화수소(석유, 천연가스 오일샌드 포함) 매장량과 생산량'이다. 탄화수소자원은 베네수엘라 국부의 원천이자 전통적으로 재정의 원천이기도 하다. 막대한 석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힘은 오늘날 야심차게 남미지역의 에너지 벨트를 조성하기 위한 베네수엘라 방식의 '볼리바리안(Bolivarian) 대안'의 추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일 천연자원 품목으로 수출을 통해 재원

을 마련하는 방식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여타 다른 국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운명은 향후 석유자원을 얼마나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가 능력과 국제시장에서 원유가의 향방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일련의 분석가들은 이러한 베네수엘라의 상황과 주어진 조건들을 역설적으로 '신-식민지병(neo-colonial disease)'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차베스 정부가 추구해 온 탄화수소 자원 민족주의 전략은 어찌면 일국의 자원외교, 경제성장, 해외투자 그리고 에너지안보 등의 이슈들과 많은 관련성을 맺고 있다. 본 페이지는 이러한 자원민족주의 실현의 제도적 '정화'라고 일컬어지는 베네수엘라 '탄화수소조직법(Ley Orgánica de Hidrocarburo)'에 대한 제도적 고찰이다. 총 9장 68조로 이루어진 이 법령은 오늘날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 방식의 자원민족주의 실현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베네수엘라 국내 재정을 보전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며 사회복지를 지탱하고 있어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각 장들과 법조항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

II. 베네수엘라 탄화수소조직법(Ley Orgánica de Hidrocarburo) 연구

1. 정 의

제1장은 탄화수소법이 미치는 ‘범위’(1절)와 탄화수소 ‘유전의 소유권’(2절)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제1조~3조).

제1조

탄화수소의 탐사, 개발, 정제, 수송, 저장, 상업화, 저장, 이러한 활동의 수행이 요구하는 정제 상품이나 노동과 같은 모든 관련된 사항은 본 법을 따른다.

제2조

기존의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석유관련 탄화수소 가스의 추출을 제외한 탄화수소 가스와 관련된 모든 활동은 탄화수소법에 의해 다스려진다.

제3조

국가 영토 내에 현존하는 탄화수소 유전과 영

해 지층 속이나 대륙 지표면, 독점 경제 구역, 그리고 국경 지역 내에서 발견되는 어떤 국가 소유의 자원이든지 그것들은 공화국의 소유이며, 공공의 자산이다. 이는 불가양한, 절대적 국가소유이다.

2. 탄화수소 부문의 활동

제2장은 탄화수소 부문 활동에 대한 규정들로 총 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칙(1절), 권한(2절), 초기 활동(3절), 탄화수소의 정제와 상업적 활동(4절), 국가자본의 참여와 국가자산 및 서비스 이용(5절), 탄화수소 활동의 의무(6절)로 구체화되어 있다 이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조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제4조~21조).

제4조

동법이 의미하는 활동과 실행공사는 공공이익과 사회이익임을 선언한다.

제5조

동법이 규율하는 활동은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환경보전을 고려하여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탄화수소 생산량 증가뿐만 아니라 탄화수소 원자재에서 고급기술국가로의 전환을 꾀한다. 탄화

1) 베네수엘라 탄화수소법은 1943년 3월 13일 처음 제정되었으며, 1967년 8월 29일, 1955년 8월 10일 탄화수소법은 부분적으로 수정되었고, 1971년 8월 6일 탄화수소 승인의 복구를 위한 효력 자산에 대한 법, 1973년 7월 22일 탄화수소 파생상품의 국내시장의 개발 국유화법, 1975년 8월 29일 탄화수소의 상업, 산업 국유화법, 1988년 9월 11일 자동차를 위한 탄화수소 파생 가연성 물질과 석유의 국내시장 개시법으로 개정되었고, 본 법과 인접한 다른 규정들은 동시에 폐지되었다.

수소에서 얻는 국가수입은 국민보건, 국민교육, 거시경제안정 및 생산투자기금 조성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한다.

제6조

국가가 채택한 탄화수소 부문의 국제협약 혹은 국제조약은 탄화수소 활동자에게 적용된다.

제7조

이 법이 정한 탄화수소 활동은 탄화수소법, 적용 가능한 기타 법률, 명령 혹은 결정에 기속된다.

제8조

탄화수소 분야 활동의 정책, 계획, 수행, 예산의 관찰과 형성, 규제, 관찰과 그 외 탄화수소의 개발과 보존, 이용, 통제는 시장 연구, 탄화수소와 탄화수소 상품의 가격 선정과 분석을 포함하여 에너지 및 석유부에서 관찰한다. 이처럼 에너지 및 석유부(Ministerio de Energía y Petróleo)는 탄화수소 집행을 관찰하는 국가 기관이며, 그러므로 그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포함하여 본 법에서 지정한 기금이나 세금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예산을 조절하거나, 이에 관련된 회계업무를 시찰하는 부서를 가진다.

제9조

이 법에 의미하는 탄화수소 유전 탐사, 탄화수소 추출, 생산, 수송 및 초기저장을 초기 활동이라 명한다.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Bolivar-

ian) 공화국 헌법 제30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초기 활동과 기타 초기 활동 관련 사업은 국가에 속한다.

제10조

동법에서 의미하는 탄화수소 생산물의 부가가치와 상업화를 목적으로, 탄화수소의 증류, 정화 및 변화 활동은 정제 및 상업화 활동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8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는 국가와 개인이 개별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국내 탄화수소 정제활동 혹은 탄화수소 생산물과 가스 수송에 종사하는 기업소유물, 현존 탄화수소 시설물, 확장 혹은 변경된 시설물은 탄화수소법에 따라 국가 소유이다.

제11조

건설될 정유공장은 정유공장건설 및 운영 국가계획에 따라야 하며, 에너지석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정유공장은 정유공정의 현대화 그리고 클린연료의 채취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제12조

탄화수소의 정제 기업은 에너지석유부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이 법과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에너지석유부는 프로젝트 사전승인을 허가할 수 있다. 면허의 양도 혹은 담보제공은 에너지석유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효이다. 강제집행에 의한 양도의 경우 국가가 집행자에게 해당금액을 대신 지불할 수 있다.

제13조

이전 조항에서 언급한 허가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기업과 그 대표자의 신원
2. 적용기술과 상품의 목적지,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경제적 자원에 대한 설명과 프로젝트 기술
3. 프로젝트나 기업의 지속기간. 이는 25년의 최고 기한을 넘길 수 없으며, 프로젝트의 필요사항을 충족시켰을 경우, 15년을 넘기지 않는 한에서 연장 기간을 가질 수 있다.
4. 공화국에 제공될 수 있는 특별 이점에 대한 기술

제14조

국내에서 탄화수소의 정제활동 종사자는 에너지석유부의 등록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 동일하게 등록, 배정, 계약, 의무 또는 허가증의 실행 상태에 있어야 한다.

제15조

발급받은 탄화수소 정제와 관련된 활동을 위한 허가증에는 34조항에 포함된 규정, 숫자 3, 본 법의 글자 a, b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시에는 허가증의 내용에 삽입하여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16조

탄화수소 정제활동 면허 권리의 양도, 담보제공은 에너지석유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7조

에너지석유부의 사전승인 없는 면허의 양도 혹은 담보제공은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면허의 철회원인으로 에너지석유부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제18조

국가행정부는 본 법에 예기된 활동들에 대해 국내 원산 제품의 공급, 제조, 서비스, 작업 기업의 견고화와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가 자본 형성을 위한 방법을 채택한다. 이에, 본 법에서 언급하는 국가, 법, 기업은 자원, 서비스, 인적 자원, 국가 자본의 극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확실히 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계약의 과정, 국가 자본 기업의 참여에 합의하여야 한다.

제19조

본 법에서 언급하는 활동을 실행하게 될 관계자들은 사용의 최대 회복에 대해 사용 가능한 기술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형태로, 적합한 규정과 최고 수준의 과학적 실용성 그리고 안전과 위생, 환경 보전, 활용, 탄화수소의 합리적 이용, 에너지 보존, 그리고 유전, 해당 활동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20조

본 법이 언급하는 활동을 실행하게 될 관계자들은 해당 활동에 관계하여 국가 행정부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이에 산업, 상업 활동과 함께 초기 활동을 하는 이들은

이 활동들에 대해 각각 따로 가지고 제출해야 한다. 국가행정부는 요구된 정보가 적합할 수 있도록 제공된 정보의 기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본 법에 예기된 유전, 운송, 유통에 관련된 활동을 실행하게 될 관계자들은 그들이 가진 기계 장비가 사회, 공공의 이익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기기들을 다른 유전이나, 운송, 유통자에게 그 기기의 대여를 허락해 줄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것은 양측에 유용할 때 이루어진다. 합의에 모자란 부분은 에너지 및 석유부가 대여 서비스를 위한 상황을 조절한다.

3. 초기 활동의 조건

제3장은 초기 활동의 수행과 관련된 규정들로 초기 활동의 방식과 조건(1절), 국영기업(2절), 민관혼합회사(3절)에 대한 정의와 이들 기업들의 활동에 의한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다(제22조~37조).

제22조

본 법의 9조에서 가리키는 초기 활동들은 국가행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혹은 독점 소유권을 가진 기업을 통해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이는 공공자본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대해 대한 결정 통제권을 가진 기업에 의해서도 역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조건

을 만족하는 경우 본 법에서 효력을 가진 합작회사로 명명된다. 이와 같이 초기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수행 기업이 된다.

제23조

국가행 정부는 에너지석유부 산하 기관으로서, 수행 기업들이 초기 활동을 수행하게 될 지리적 구역의 범위를 결정한다. 이 구역은 최대 100km²의 면적 단위로 나뉜다.

제24조

국가행 정부는 법적으로 초기 활동 수행 권한을 수행 기업으로 옮길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당 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유권이나 국가 소유 유/부동자산에 대한 권한을 옮길 수 있다. 국가 행 정부는 수행자들이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행된 권한 이동의 목적에 방해가 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

수행 기업들은 그들에게 이행된 활동의 작업에 필요한 일이나, 본 법의 조항에 맞는 모든 혹은 승인된 계약들을 이행할 수 있다.

제26조

수행 기업들은 그들의 작업을 위해 기술을 위해 시행되는 실험, 조사, 개발 기술이나 대학을 설립, 건설할 수 있으며, 본 법에서 말하는 활동에 연관된 개인 훈련 센터를, 국내 현존하는 비슷

한 목표의 기관이나 단체의 개발이나 기능과 조정에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

국가행정은 법정 자문 위원회를 통해, 본 법에서 지정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 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한 동업자와의 주식회사를 포함하여, 이 기업들을 위해 관련 사항을 고려한 법적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제28조

본 법에서 세운 법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앞서 언급한 기업들은 주주조합의 승인하에 그들의 활동 개발을 위한 다른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동일하게 설립 회사의 목표, 기능, 연계, 폐업, 청산 혹은 어떤 법적 수정 내용에 대한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승인은 자회사에도 적용된다.

제29조

국가 석유 기업들은 본 법과 그 규정, 그들의 신분, 에너지석유부 산하 기관으로서의 국가행정부 감시하의 규정, 그리고 그들에게 승인된 공통법에 의해 적용된다.

제30조

에너지석유부 산하 기관으로서의 국가행정은 국제적이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석유 기업과 그의 자회사들의 예산과 감찰 기능을 수행하며, 본 법에서 언급하는 물질들에 대해 지켜

야 할 정책과 지침을 감독한다.

제31조

국가 기업이나 자산 또는 배당금의 재평가에서 비롯되어 앞서 언급된 기업이나 국가에 배정된 활동들이 포함하는 자회사, 기업, 국가기업의 기능이나 그 자회사와 그들 사이에서의 교환 작업들의 사회적 자본의 증대나 설립은 이러한 작업의 기재와 관련하여 세금 지불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32조

국가 석유 기업의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종사자들은 정규직에 종사하게 되고, 다만 노동법에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는 해고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공공 계약의 현 정책을 유지하며, 사회적, 경제적, 복지, 노동조합이나 전문적 개선, 모든 공공 계약, 노동법에서 세워진 사항은 보증된다. 또한, 피고용인들은 추가적 인식 또는 보수적인 면에서 효율성에 대한 장려금이나 활용, 관습, 인사 적용에서 전통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 기업에 의해 내려오는 정책에 맞게 적용된다. 이와 같이 국가는 퇴직자들의 은퇴 공포 이전에 관련 연금이나 은퇴 계획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한다. 이러한 은퇴계획은 저축기금을 포함하여 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계획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 계약에 대한 편견 없이 정당하게 유지된다. 국가교육협동기관(Instituto Nacional de Cooperación Educativa)과 관련된 법에 포함된 규정은 국가에 종속된 탄화수소의 상법 및 기업법에 적합하게

성장한 기업들에 적용된다. 노동자들의 이익에 연관되는 신탁(fideicomiso)은 적합한 공공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제33조

민관혼합회사의 설립과 초기 활동 수행을 결정할 조건들은 의회(la Asamblea Nacional)의 우선적 승인이 필요할 것이며, 이의 효능을 위해 에너지 및 석유부처 산하 국가행정부는 공화국의 요청에 의해 사전적 특별이점을 포함하여, 해당 사항의 조건과 설립에 우선한 모든 상황의 정보를 국가의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의회는 필요조건을 수정하거나, 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조건들을 설립할 수 있다. 해당 조건의 어떠한 후 개선은 에너지 및 석유부나 에너지 및 광물 위원회에서 우선적인 검토 후, 국가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관혼합회사는 현 법에 의해 유효하지만, 특별한 경우, 에너지 및 광물이 의회가 발행한 규정에 의거하여 특별 합작회사의 성장을 확실히 하고, 국가이익에 배가 될 경우 국회 직속법에 의한 합의에서 비롯된 조건이나, 규정에 의해 유효하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상법 규정이나 적용 가능한 법이 적용된다.

제34조

제33조항과 관계된 최소한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최대 운영 기간은 25년이며, 양측 동의 시 최대 1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이 연장은 법이 부여한 실행 기간의 반을 넘긴

후, 유효 기간의 5년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수행 활동 시행 지역의 형성, 확장, 기원, 위치의 명시와 그 외의 규정을 설정할 특이 사항들
3. 이러한 조건들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따로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조항들이 수반된다
 - a. 해당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타 어떤 제품이나, 이에 필요한 부분을 형성하는 기기와 부속품을 포함하여 영구적 영토와 노동, 그 본위나 부가적 성질을 가진 것들은 국가에 귀속되기에 흠이나 어떤 배상 상태 없이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위임 받은 권한에 의해 시효가 종식될 때 그 기능의 연장이 보장되며, 이에 어긋날 경우, 경제적이나 환경적으로 최소한의 손해와 함께 양도되어야 한다.
 - b. 수행 활동 목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어떤 자연적 의구심이나 논쟁, 이 분야에 해당되는 법에 의해 허용된 재판을 포함하여 양측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목적이나 이유로 국외에서의 주장에 선택을 줄 수 없는 한 국가에서 정한 법원 재판에 의해 법대로 결정된다.

제35조

국가는 실질적 존속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의 재판성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해당 활동의 수행은 실제 존속을 위해 수행하는 이들에게 모든 위험의 부담이 전가된다. 모든 경우에 있어 이러한

상황은 이 활동 수행을 위해 부여된 권한을 통해 기관 내에 언급되어야 할 것이며,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도 같은 내용이 수반된다.

제36조

해당 활동 수행을 위해 부여된 권한을 가진 기관들에는 국가를 위한 이점을 위해 본 법에서 규정한 고려 사항들이나 기여도에 따른 특별 수당의 증대 혹은 고용이나 신규 할당, 기술진보 혹은 장학금 수여나 기술적 고용기회와 같이 인적 자원의 개발을 위한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다.

제37조

수행자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 공공 관계 기관은 각기 다른 작업의 협력을 촉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석유부 산하 국가행정부는 필요조건을 정하기 위해 관련 기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기업들을 선정할 것이다. 에너지석유부는 국가 차원에서 어떤 배상 조치를 만들지 않는 선에서 이 선정 과정을 중지시키거나 이를 공포할 수 있다. 공공이익과 해당 활동의 특수한 경우에 따라, 장관회의(Consejo de Ministros)의 승인에 앞서 수행자들의 직접적 선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 추가적 권리

제4장은 일종의 추가적 권리를 규정하는 내용들이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일시적 점유, 수용과 지역권 관련 조항(1절)과 이를 이행하는 구

체적인 절차(2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제38조~41조).

제38조

탄화수소 자원의 정제, 시험, 초기 유통, 운송, 채취, 개발, 탐사 활동을 수행하는 데 권한을 위임 받은 자들은 일시적 점령이나 자원의 수용, 그리고 경우에 따라 해당 활동에 맞는 사용권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제39조

수용에 관한 것은 해당 분야에 다스려지는 법의 내용에 포함된다.

제40조

개인 소유지에 사용권이 행사될 경우, 위임자들은 토지 소유자와 필요 계약을 맺어야 한다. 협조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이를 행하고자 하는 이는 시민으로서 지역 관할권과 함께 일의 시작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법정에 요청할 수 있다. 요청자는 해당 지역과 영향을 받을 자산, 그리고 수행하게 될 작업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합법적으로 필요한 모든 사항을 요청 사항에 기입해야 할 것이다. 사용권의 요청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필요하다.

1. 토지 사유자의 이름과 수리 목적의 자산에 대한 권한을 가진 이의 이름을 알 경우, 해당자의 이름
2. 수리 설비의 영향을 받게 될 자산과 필요한 지역, 그리고 수행하게 될 작업

3. 수리 작업 기간과 그 외 관련 사항
4. 양수인이 판사에게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외 자료들

법원에서는 사전에 서류를 받고, 같은 날 피요청자에게 소환장 발송 이후 발생 가능한 손해를 정할 전문가의 임명까지 발송 3일째 되는 날 법정 출석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소환장을 받지 못할 경우, 법원은 지역, 전국의 대표 신문에 관련 글을 신도록 하여 해당 발행물의 위탁 이후 발송으로부터 피요청자가 3일째 날에 출석할 수 있도록 요청하며, 그 시간 동안 발생 가능한 손해와 일어날 수 있는 배상 사항을 조사할 지정 전문가를 지정한다. 법정 출석을 위해 지정된 시간 동안 요청자는 전문가를 지정하며 피요청자는 두 번째 전문가를 지정한다. 피요청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전문가 지정을 거부할 경우, 법원이 그를 대신하여 세 번째 전문가를 지정한다.

지정된 전문가들은 그의 수락과 선서 확인을 위한 지정 현장에 출두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이 그의 대리인을 이행한다. 전문가들은 그의 임명 후의 소환장으로부터 5일 안으로 그의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일단 보고서가 제출되고 나면 요청자는 다음 발송으로부터 5일 안으로 법원에 측정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다음 발송으로부터 5일 안으로 요청 작업의 시작을 시작할 수 있다. 피요청자가 배상금을 받을 경우, 법원은 요청 지역의 사용권을 행사하기 위해 결정문을 지시한다.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법적 다음 단계를 거치게 되며, 이에 의해 의견 불

일치의 표시로부터 요구에 근접한 요청은 동일 건에 대한 답변을 위한 기간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요청자는 그의 요청에 유리하도록 그 내용을 바꾸거나 나아지게 할 수 있다.

제41조

불모지에 사용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임자는 국가행정부와 필요한 합의를 하여야 하며, 국가행정부가 그 지분을 무효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적합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사용권을 행사할 해당 토지에 특정 우세 요건이 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배상금은 사용권에서 얻은 이익으로써 이를 지불하게 될 것이며, 이전 조항에서 앞서 보았던 내용에 적합하게 적용된다.

5. 유전 관련 사항

제5장의 경우는 베네수엘라 탄화수소 유전의 통합과 국경지대 유전에 대한 규정으로 자원의 영토적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가 유전과 다른 국가들과의 국경지대 유전 관련 (1절) 사항들에 대한 규정이다(제42조~43조).

제42조

탄화수소 유전이 개발자보다 활동하는 지역 아래로 더 확장될 경우, 그 지역은 에너지석유부의 승인을 위한 목록에 있는 개발통합협정(conservio de unificación para su explotación)을 체결하여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의 발송을 개발 분야에서 사용하는 규정을 이용한

다. 유전 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지역에서부터 이를 수행하지 않는 지역까지 확장될 경우, 에너지 석유부 산하의 국가행정부는 국가법의 보호 아래 필요한 수단을 취할 수 있다.

제43조

탄화수소 유전이 본 법의 제3조에서 언급하는 지역 아래에서 확장될 때나 이웃국가 영토를 포함할 때, 우선적으로 이웃국가와의 통합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채로 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합의 조정이 힘든 경우, 국가행정부가 개발법의 재편성을 포함하여 국가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로열티 등

제6장은 베네수엘라 탄화수소 자원민족주의 경향을 가장 잘 나타내는 조항들로 탄화수소 개발과 관련된 로열티(사용료: 1절)와 세금제도(2절)에 관한 조항들이다. 이 조항들은 차베스 정부의 탄화수소자원개발법에서 가장 크게 수정된 규정들로 알려져 있다(제44조~48조).

제44조

어떤 유전에서든지 축출 탄화수소의 양에 대해서 국가가 30%의 참여 권한을 로열티로써 갖는다. 국가행정부는, 오리노코 강 일대의 초중질 유(petroles extrapesado)나 한계 유전(yacimiento maduro)에서 보여지듯이 본 법에서 지정한 30%의 사용료를 지불하기에 경제적으로 업적이 충

분치 않은 경우, 추출 수익금의 20%까지 인하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30%까지 회복하여 유전의 수익이 만회될 때까지 허용한다.

제45조

로열티는 국가행정부에 의해 현물 혹은 현금,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걸어진다. 다른 방법으로 는 이를 징수하지 않으나, 이를 전체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선택권은 있다.

제46조

국가행정부가 특허 사용료를 분류에 따라 받을 경우, 운송, 유통, 추출 기업 서비스 분야관련 자신들의 활동으로 할당 금액을 지불할 자들은 국가행정부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그 활동을 빌려 사용할 수 있다.

제47조

국가행정부가 특허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개발자는 현 탄화수소의 양만큼의 금액을 지불하며, 상품 분야, 시장 가격 혹은 타당한 가격, 가격 결정자에 의해 정해진 예산 가치에 따른 양측의 손해에 따라 정해진다. 이는 에너지 및 석유부가 적절한 목록을 조정할 것이며, 이는 접수 후 5일 내 숙고 후 국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제48조

여타 국법에 지정된 세금 정책에 대한 내용과 상관없이 본 법이 언급하는 활동을 실행할 자들

은 다음의 세금을 납부한다.

1. 토지 면적세: 개발지가 아니었다가 지정 받은 토지 면적 확장 부분에 대하여, 매년 사용한 단위로 각 1km² 혹은 그에 대한 부분당 100U.T.(납세 단위, Unidad Tributaria)와 같은 가치의 세금을 지불한다. 이 세금은 처음 5년 동안 매년 2%씩, 다음 5년 동안은 5%씩 증가된다.
2. 순소비세: 생산된 탄화수소 상품이나 작업 그 자체에서 가연성 물질로서 소비된 물질의 1입방미터(m³)당 가치의 10%로, 이는 최종 소비자에 의해 지불된 가격 혹은 해당 상품이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에너지 및 석유부에서 정한 가격으로 매겨진다.
3. 일반 소비세: 내수 시장에서 판매된 탄화수소 상품의 리터당 최종 가격의 30~50%로, 양측 범위의 약수는 매년 예산법에 의해 정해진다. 이 세금은 최종 소비자에 의해 지불되므로, 매달 국가 국고(Fisco Nacional)에 안치하기 위해 규정 외적으로 공제된다.
4. 추출세: 어떤 유전에서든지 추출된 모든 액화 탄화수소 가치의 3분의 1로, 이는 본 법 제47조의 금전 지불 특허 사용료 기준에 의해 정해진다. 이 세금은 본 법의 제 44조에서 언급한 탄화수소 추출 실행 기업에 대한 특허 사용료와 함께 매달 지불한다. 추출세를 책정할 때, 납세자는 특허로 지불하는 추가적 로열티를 포함하여, 지불된 로열티를 공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납세자는 또한 매해

특허로 지불을 대신할 수 있는 추출세에 대한 공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이는 상기 혜택 해당 기간 동안만 해당된다.

국가행정부는 시장 현황이나, 특별 투자 장려 프로젝트, 특히 이차 복구 프로젝트에 따른 정당성을 심사할 때 결정 시기에 따라 추출세를 최소 20%까지 내릴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이러한 조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될 때, 다시 원상 복구시킬 수 있다.

5. 수출 등록세: 국가 영토 내 어떤 항구에서든 수출되는 모든 탄화수소 가치의 0.1%로 이는 소비자 가격으로 매겨진다. 이를 위해 판매자는 출항하기 전 수출량, API가 선정된 단위, 황 함유량 그리고 수화물의 도착지에 대한 정보를 에너지 및 석유부에 제출해야 한다. 판매자는 에너지 및 석유부에 해당 송장의 사본을 배의 출항일 후 45일 안으로 수출 등록세 지불 확인증과 함께 제출한다. 국가행 정부는 수출 등록세를 정하는 시기를 확실한 일반, 공공 이익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자유로이 할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이러한 조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될 때, 다시 원상 복구시킬 수 있다.

7. 탄화수소 분야의 산업화

제7장은 탄화수소 분야 산업 활동에 대한 일반 규정으로 활동의 형태와 조건(1절), 기타 부산물(2절)에 대한 규정이다(제49조~55조).

제49조

정제 탄화수소의 산업화는 분류, 증류, 정제, 변화, 이들의 혼합과 변형 활동으로, 석유나 다른 탄화수소에서부터 나오는 특성 물질을 얻어 이의 가치를 더하기 위한 활동들로써 이해한다.

제50조

정제 탄화수소의 산업 활동은 국가에 의해 직접적으로 혹은 독점 기업, 어떤 비율로든지 국가 및 민간 자본 참여로 이루어진 합작회사 그리고 개인 기업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제51조

국가행정부는 국내 정제 탄화수소의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는 특히 아래의 관점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우선적으로 정제 탄화수소의 기본 변형 분야를 더욱 장려한다.
2. 국내 산업 분야의 개발을 지지할 수 있는 물질 제조 프로젝트 투자를 형성한다.
3. 국가 주도 아래 탄화수소의 정제, 공정 공장들이 수출 대안, 양적, 질적, 가격 선정 면에 있어 원료의 추후 과정을 위한 적합한 공급과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의 발전이 가능한 상업적 조건에 대해 우선적 성격을 보장함을 확실히 한다.
4. 정제소 주변이나 탄화수소 물질이나 그 파생물의 공급이 쉬운 지역에 기업 공단을 발전시킨다.
5. 국내 탄화수소 산업화에 있어 금융법의 참

여와 생성을 촉진한다.

6. 국내 탄화수소의 산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동시에 산업화, 지하수, 이들이 생산해 내는 투자자본도 증진시킨다.
7. 이 외 규정이 지정하는 내용

제52조

국가행정부는 국가 자본 형성을 촉진시키고 이로써 주요 공정 투자 자본 가치를 높이며, 그의 생산품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하는 정제 탄화수소의 산업화 프로젝트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53조

국내 정제 탄화수소 산업화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기업은 에너지 및 석유부가 부여하는 허가증을 받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이 필요하다.

1. 기업과 대표자의 신분
2. 원자재 물질의 공급지 표시
3. 생산품의 목적지를 명시한 프로젝트의 정의

제54조

국내 정제 탄화수소 산업화 활동에 참여하는 자들은 에너지 및 석유부에서 발행한 등록증을 작성해야 한다.

제55조

탄화수소의 정제 과정이나 정제 물질의 산업화에서 상업적, 산업적, 전략적 가치를 가진 물질

들 혹은 기존의 자격증이나 허가증에 인정한 것과 상이한 물질이 나왔을 경우, 기업들은 해당 물질의 이용과 미래 목표에 상응하는 조건들을 결정할 수 있는 국가행정부에 이를 알려야 한다.

8. 판매활동

제8장은 탄화수소 제품의 판매활동에 대한 규정으로 판매자(1절)를 정의하고 있으며, 국내거래(2절)에 대한 조건과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제56조~65조).

제56조

본 법에서 언급하는 상업 활동은 국내시장, 국외시장, 그리고 자연 탄화수소뿐 아니라 그 파생된 상품까지 모두 포함한다.

제57조

자연 탄화수소의 상업 활동은, 이와 같이 국가행정부에서 지정한 규정에 의한 파생 상품을 포함하여, 본 법 27항에 명시된 기업들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이에 초기 활동을 수행하는 합작회사는 그들이 생산하는 자연 탄화수소를 본 법 27조가 언급하는 기업들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

제58조

선행 조항에서 명시됨에 따라 제외된 추출 상품의 상업 활동은 국가에 의해 직접적으로, 독립 기업, 어떤 비율로든지 국가 자본 지분이 있는 합작회사 그리고 개인 기업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제59조

본 법에서 지정된 국내 시장에 대한 규정의 대상은 에너지석유부 산하 국가행정부가 명시한 결정문(Resolución)을 통한 탄화수소 파생 상품이다.

제60조

선행 조항에 따라 국가행정부가 명시한 탄화수소 파생 상품의 공급, 보관, 운송, 유통, 판매 활동은 국내 공공 구매를 위한 공공 서비스를 설립한다. 에너지석유부 산하 국가행정부는 탄화수소 파생 상품의 가격을 정하고, 그 공급, 서비스 효율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며, 중도 개입은 피한다. 국가행정부는 가격 선정에 있어 본 법의 규정과 그 규정이 지정하는 예방 조치에 따른다. 이로써 선정된 가격은 판매와 본 법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다른 제도를 통해, 투자나 해당 상품의 이윤율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제61조

탄화수소 파생 상품의 공급, 저장, 운송, 유통, 판매 활동을 원하는 일반인이나 법인은 에너지 및 석유부의 우선적인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이 허가증은 본 법에 설립된 기준과 규정, 관련 해결책들에 명시되어 있다. 상기 활동들을 수행하는 일반인이나 법인은 해당 활동 중 법적이고 셀 수 있는 분리만 명확하면 언제든지 하나 이상의 활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허가증의 만료와 연장은 에너지석유부의 우선 승인이 요구된다.

제62조

탄화수소 파생 상품의 국내 시장을 위한 기계, 설비, 기관의 건설, 수정, 확장, 철수나 철거는 에너지 및 석유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3조

본 법에서 설립한 규정, 해결책의 불이행 시, 에너지석유부는 국민들과 국가 자산의 안보에 위협이나 서비스의 지속 효율성을 고려하여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64조

등록 하급 사무소는 에너지석유부 승인을 필요로 하는 활동에 연관되는 자료를 상기 기관의 허가 없이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본 법에 의해서 이에 위배하여 제공된 자료는 어떤 효력도 가지지 못한다.

제65조

현재 본 법의 대상물인 탄화수소 파생상품의 내수 상업 활동을 수행 중인 일반인이나 법인은 제3자보다 같은 조건하에 해당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국가 석유 기업이나 다른 어떤 사람이라도 해당 활동의 수행 목적을 위해 부동산 판매를 제공하는 경우, 현재 수행 중인 자들은 같은 조건하에, 이를 수행할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가연성 물질의 판매에 대한 권리

의 양도에서 활동을 수행 중인 자에게 속하여 시장 기반 가치가 인정되며 지불된다.

9. 벌 칙

제9장은 탄화수소 개발과 판매 그리고 이에 대한 탄화수소법 이행에 대한 위반과 징계에 관한 규정들이다. 벌금과 금액(1절)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놓고 있다(제66조~68조).

제66조

사람, 자산, 기업의 안전과 보호, 건설 현장, 설비대여, 탄화수소와 그 파생상품의 질적, 운송, 유통, 가격과 세금에 대해 언급한 본 법과 그 규정 그리고 의무적 실행을 표명한 요구에 대한 위배는 50~5,000U.T.의 벌금이나 최대 6개월까지의 활동 중단 혹은 두 가지 모두 처벌받게 될 것이며, 이는 에너지석유부 산하 국가행정부가 위반자의 활동 수행에 있어 그동안의 활동과 부족함의 정도를 고려하여 부과한다. 선례 처벌은 그 위반 활동이 유래된 행정적, 예산상 혹은 처벌에 관한 명확한 기준으로 위반을 막고, 법적으로 침해된 상황을 복구시키기 위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하며, 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시에는 여타 다른 법들을 준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제67조

선행 조항에서 지정된 벌금이 국가 기업에 부과될 경우, 해당 상황의 개선을 위하고, 관련 대

표 구성원이나 지도 위원회 혹은 이 분야 관련 자들에 대해 악화될 수 있는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에 알맞은 적합한 조사가 열린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는 45일의 기간 내로 결론 나며, 이후 5일 동안의 심사 기간 내로 에너지석유부에 보고되어야 한다. 에너지석유부는 상기 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다시 시작하거나 확장시킬 수 있다.

제6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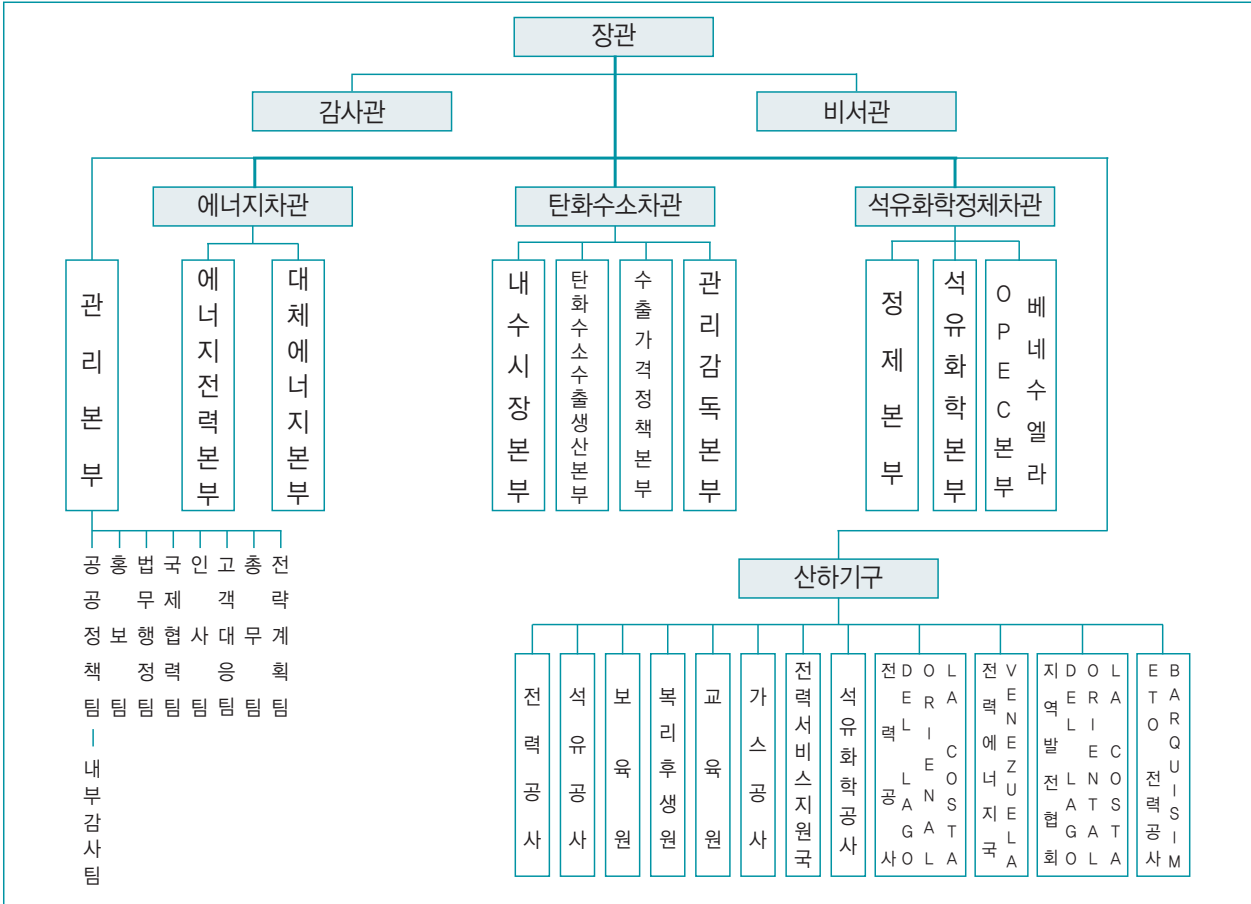
에너지석유부에 반하여, 탄화수소법에 의해 허용된 조건과 용어에 대한 행정적 문의와 행정 논쟁은 허용된다.

Ⅲ. 평가 및 결론

산업과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탄화수소 분야에서 1975년 석유산업의 국유화 이후 베네수엘라는 다시 한 번 1990년대 초반부

터 석유산업에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전략을 취했다. 엄청난 양의 매장된 석유를 개발하고 채굴된 원유(특히 오리노코벨트의 초중질유)에 대한 해외 다국적 기업들과 민간자본의 투자가 강화되었다. 하지만 남미 급진 좌파 정부인 차베스 정부가 들어선 이후 1999년 개헌을 통해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고, 2002년에 “탄화수소산업 조직법(Ley Orgánica de Hidrocarburo)”을 통해 석유산업의 국유화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1999년 베네수엘라 헌법 303조에 이미 명시한 “경제적 정치적 주권과 국가적 전략의 이유로 국가가 탄화수소 산업 활동의 모든 면을 관리한다”는 조항을 구체화시킨 2002년의 탄화수소 조직법은 기존의 개방과 관련된 모든 법적 조치들을 폐지하거나 새로운 조건으로 대치했다. 지금까지 국가의 참여가 최대 35%에 불과했던 합작투자에 있어서 국가의 참여를 50% 이상으로 의무화했고, 기존에 16.6%였던 로열티는 30%까지 인상했다(제6장 참조). 물론 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에너지석유부의 역할은 막대해졌다(그림 참조).

〈그림〉 베네수엘라 에너지석유부 조직도



출처 : Ministerio de Energia y Petroleo(베네수엘라 에너지석유부)

21세기 들어 베네수엘라처럼 남미의 국가들에서 이러한 자원민족주의의 제도화 현상은 빈번히 목격되는 현상이다. 베네수엘라를 포함하여 남미지역 개별 국가들에서 탄화수소 자원(석유 및 천연가스, 오일샌드) 보유국들이 자국 국영기업의 석유자산 지분을 늘리고 외국의 자원개발기업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등 신자원민족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자원민족주의는 일시적인 정치적 선택이 아닌 헌법과 관련법들을 제도화해 냄으로써 그 영향력은 막대하다. 베네수엘라 사례처럼 이를 이행하

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해당 기관 설립과 기관의 권한 강화는 더욱 자원민족주의 체제를 강화해 가고 있다. 자원의외교가 절실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면밀히 분석 관찰해 실질적으로 제도적 협력 방안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하 상 섭

(해외입법조사위원,
한국외대 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 교수)